

남 동 구
구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.



제2056호
2025년 3월 14일
금요일

선 람	기관의 장

공 고

○ 의회사무국 제 1 7 호 「남동구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의 회 사 무 국 2
공 고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

회 람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남동구

편집 : 홍보실

공 고

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(입법예고) 제2025-17호

남동구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「남동구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남동구의회 회의 규칙」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5. 3. 14.

남 동 구 의 회 의 장

1. 제안이유

-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공포(2025.3.10.)됨에 따라 남동구의회 상임위원회 소관부서를 직제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의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

2. 주요 내용

- 총무위원회 소관부서에 안전교육국 편입(안 제6조제2항제2호가목)

3. 입법예고 기간 : 2025. 3. 14. ~ 3. 20.

4. 의견제출

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 (참조 :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/ ☎ 453-5033, FAX 453-5029)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의견제출자의 주소, 성명, 전화번호

다. 기타 참고사항

5. 규칙안 : 별첨

※ 이 규칙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(<http://council.namdong.go.kr>)에 게재되어 있습니다.

남동구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(유광희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3063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년 3월 14일

발 의 자 : 유광희 의원

찬 성 자 : 이용우 의원 외 2명

☐ 제안이유

-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공포(2025.3.10.)됨에 따라 남동구의회 상임위원회 소관부서를 직제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의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

☐ 주요내용

- 총무위원회 소관부서에 안전교육국 편입 : (안 제6조제2항제2호가목)
⇒ 기존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이었던
여성가족과, 식품위생과가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변경됨

☐ 본 문 : “별첨”

☐ 신·구조문대비표 : “별첨”

☐ 참고자료

남동구조례 제 호

남동구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남동구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제2호가목 중 “재정경제국”을 “재정경제국, 안전교육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6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) ① (생략)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(생략) 2. 총무위원회 가. 홍보실, 감사실, 정책기획국, 행정국, <u>재정경제국</u>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. ~ 마. (생략) 3. (생략)	제6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가. ----- ----- <u>재정경제국</u> , <u>안전교육국</u> ----- 나. ~ 마. (현행과 같음) 3. (현행과 같음)

(별지 제2호 서식)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제3조제3항 관련)

1. 비용발생요인

- 비용발생 “해당사항 없음”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
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
총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비용발생 “해당사항 없음” 으로 「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
제3조제3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고자 함

작성자 : 의회사무국장 김 은 구

[참고자료]

□ 지방자치법

제71조(위원회에 관한 조례)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□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

제3조(실·국의 설치)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홍보실, 감사실, 정책기획국, 행정국, 재정경제국, 안전교육국, 복지국, 환경교통국 및 도시국을 둔다.

□ 남동구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

제6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)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한다. 다만,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본회의에서 심의하기로 한 안건은 처리하지 아니한다.

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의회운영위원회

가.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

나.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

다. 법 제83조에 의한 회의규칙에 관한 사항

2. 총무위원회

가. 홍보실, 감사실, 정책기획국, 행정국, 재정경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

나. 각 동의 사무 중 제2호가목에 속하는 사항

다. 도시관리공단 사무에 속하는 사항

라. 남동문화재단 사무에 속하는 사항

마. 그 밖에 다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

3. 사회도시위원회

가. 복지국, 환경교통국, 도시국, 보건소, 남동산단지원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

나. 각 동의 사무 중 제3호가목에 속하는 사항

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

검 토 구 분		유	무
검토사항	1.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. 행정규제, 물가대책위 등 심의 3.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.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. 홍보계획(보도자료) 반영여부 6. 그 밖의 문제점		
부서별 의견			
협의개요	부 서	제출의견	검토내용